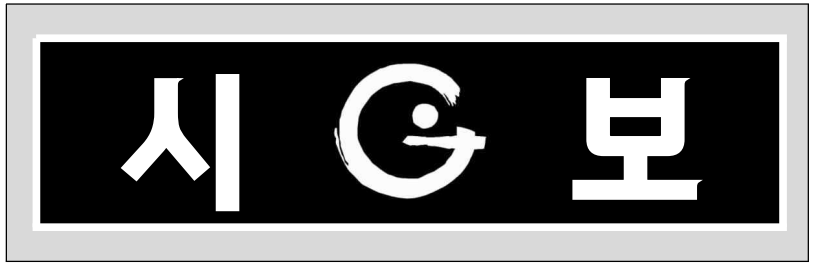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21호 2026. 5. 27.(수)

### 고 시

- 광양시 고시 제132호
- 광양시 고시 제133호
- 광양시 고시 제134호
- 광양시 고시 제13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 1
-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5

### 공 고

- 광양시 공고 제1248호
- 광양시 공고 제1249호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행정예고 ..... 7
-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 ..... 10

회 람										
--------	--	--	--	--	--	--	--	--	--	--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03-2 외 4필지 일원
	면적	750㎡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광양읍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점용기간		2026. 5. 21. ~ 2031. 5. 20.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494-6 일원
	면적	0.544㎡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한전주 2본 설치
점용기간		2026. 5. 2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산109-10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 광 양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6	13	주간선 도로	2,372	광로2-8호	대로1-24호	일반 도로		전남 259호 (02.12.13)	
변경	중로	3	36	13	주간선 도로	2,308	광로2-8호	대로3-8호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24	13	국지 도로	530	중로3-36호	중로3-68호	일반 도로		전남320호 (11.09.20)	
변경	중로	3	124	13	국지 도로	530	중로3-36호	중로3-68호	일반 도로			기점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27	11	국지 도로	301	대로3-8호	광장79호	일반 도로		전남2012-158호 2012.5.11	
변경	소로	1	227	11	국지 도로	305	대로3-8호	광장79호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43	6	국지 도로	591	중로3-36호	진월면 망덕리 산119-1	일반 도로		2017. 11. 30	
변경	소로	3	543	6	국지 도로	668	중로3-36호	진월면 망덕리 산119-1	일반 도로			

##### (2)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6	중로3-36	• 종점, 연장, 선형변경 - 종점 : 대로1-24호 → 대로3-8호 - L = 2,372m → 2,308m 감)64m	• 소로1-227호선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코자 도로 변경
중로3-124	중로3-124	• 기점 선형변경	• 중로3-36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한 기점부 선형 변경
소로1-227	소로1-227	• 연장 및 선형변경 - L = 301m → 305m 증)4m	• 중로3-36호선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코자 도로 변경
소로3-543	소로3-543	• 연장 및 선형변경 - L = 591m → 668m 증)77m	• 중로3-36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로 연장 및 선형 변경

#####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1	광장	경관광장	진월면 망덕리 62-3	-	증)3,979	3,979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경관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 면적 : 3,97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휴식을 도모하고 경관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경관광장 신설</li> </ul>

2. 지형도면 고시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59-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 광 양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38	2~4	특수 도로	18,912	신원리 538-2 번지 일원	행정 구역계	보행자 도로	-	광고 제2011-100 (11.11.11)	• 중복결정 - 근린공원 140 - 경관광장 71,73
변경	소로	3	538	2~4	특수 도로	18,862	신원리 538-2 번지 일원	행정 구역계	보행자 도로	-		• 중복결정 - 근린공원 140 - 경관광장 71 - 수변공원 196

##### (2)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538	소로3-538	• 연장축소 - 18,912m → 18,862m 감)50m	• 도로 조성현황 반영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나. 공간시설

##### (1) 광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3	광장	경관 광장	다압면 고사리 159-4 일원	24,879	감)24,879	-	광양 100호 (11.11.11)	

##### (2) 광장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3	광장	• 폐지 - 면적 : 24,879㎡	• 공간 활용성을 제고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기존 경관광장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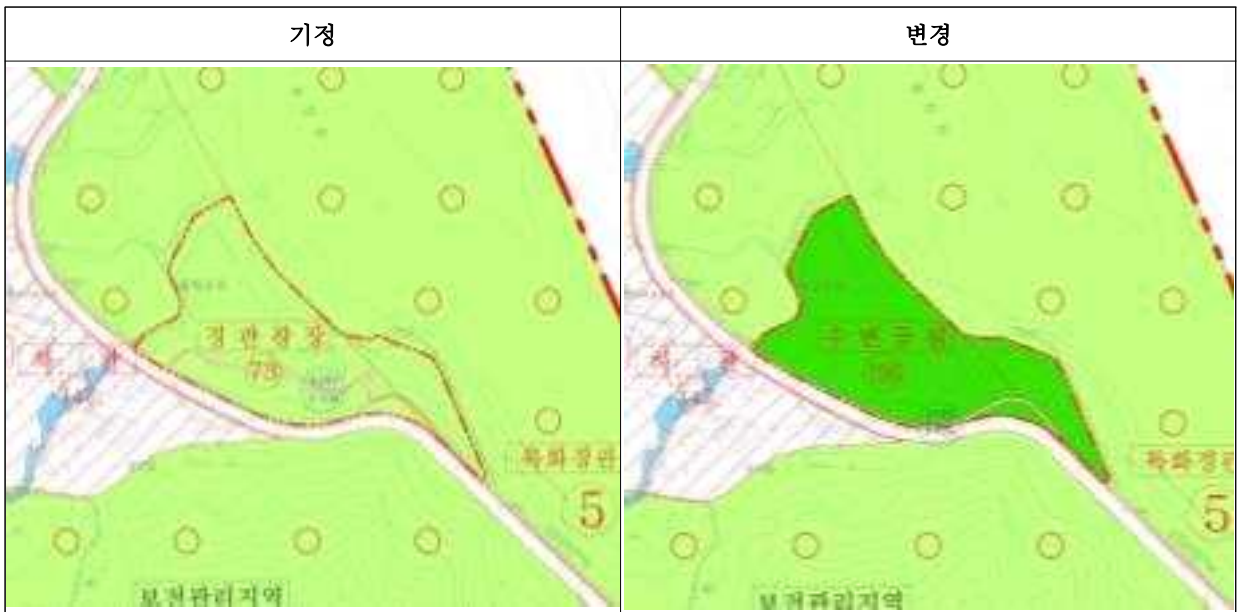
(3)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6	송정공원	수변공원	다압면 고사리 159-4 일원	-	증)24,894	24,894	-	

(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6	송정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 면적 : 24,89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경관을 활용한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경관광장을 폐지하고 수변공원으로 신설</li> </ul>

2. 지형도면 고시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치 및 운영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광 양 시 장

### 1. 행정예고의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 2. 주요내용

#### 가. 운영목적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운영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운영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나.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다. 고정식 CCTV 설치장소



- 광양읍 순광로 688(광양터미널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라. 촬영시간: 24시간

마. 단속시간: 평일 08:00~19:00(단속유예 11시30분~14시)

**3. 행정예고(공고) 방법: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5. 20. ~ 2026. 6. 9. (21일간)**

**5. 현장위치도 및 단속구역**

연번	읍면동	위치도	비고
1	광양읍	<p>광양터미널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광양읍 순광로 688] 양측 270m</p>	

**6. 단속개시일: 2026. 6. 10.(수)**

**7. 의견제출**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개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6. 9.(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를 광양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단속개시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97-2591)

라. 보내실 곳: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광양시청 교통과(☎ 061-797-2869)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입법취지(제정이유)

- 서울사무소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주택보조비, 주택주거비 등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업무처리 및 절차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최신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등) 주택보조비 및 주택주거비 등 용어 명확화

\* 안 제1조~제4조

- (운영기준 정비)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 및 비용분담 사항

\* 안 제5조~제6조



○ (지원체계 정비) 주택보조비 등 지급 및 상한 설정 기준마련

\* 안 제7조~제10조, 별표, 별지서식

○ (복무체계 정비) 근무자 복무기준 및 업무·보고 체계 명확화

\* 안 제11조~제14조

#### 4. 규정안: 별첨

#### 5. 의견제출

○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광양시장(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출기한: 2026년 6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광양시 기획예산실

-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 전 화: 061-797-1942

- 전자메일: jinhoney@korea.kr

- 팩 스: 061-797-2574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 업무를 지원할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2.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3.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택주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소재지)** 광양시 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광양시 소속 일반직, 임기제 및 별정직 등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사무실 임차료, 주택보조비 등 사무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양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② 일반운영비 등 기타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사무실 임차료)** ①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

② 사무실 임대차 실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한다.



③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서 요구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7조(주택보조비 등 지원)** ① 광양시는 사무소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주택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  
표와 같다.

② 사무소 근무자가 수도권 내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간)** 주택보조비 등의 지원기간은 인사발령에 따른 해당 근무지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 주택보조비 등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지원금 환수)** 광양시장은 이 규정에 따른 주택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복무)** 사무소 근무자의 복무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  
른다.

**제12조(업무)** 사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비, 기금 등 예산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중앙부처 안내
3. 기타 광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협력 업무 등



제13조(보고) ① 사무소 근무자는 매주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 근무자는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현지의 주요사안 발생시마다 소관 부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운영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소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택 보조비 등 지원기준(제7조 관련)

연번	지원항목	지원한도	비고
1	주택 임차보증금	예산의 범위	실비
2	주택 보조비	월 100만원	실비
3	주택 주거비*	월 50만원	정액

\* (주택 주거비 제외) 서울특별시에 대중교통 기준으로 통상적인 출근 시간대에 편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 [별지 제1호서식]

## [    ]주택보조비 [    ]주거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전화번호	
	주소(주거지)		
	주소(근무지)		
임대차 주택사항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	주택의 형태	면적(제곱미터)	지역
	신청 주거지원금	임대보증금	월세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주택보조비 [    ]주거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주거지원비 및 주택보조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광양시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대차계약서 사본(「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2. 입금계좌 통장 사본</li> <li>3.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수수료 없음
-------------	--	-----------

